

개인별 지원계획

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지원사업

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및 부모상담지원사업

발달장애인 거점병원·행동발달증진센터

Q 개인별지원계획 사업이란?

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 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

○ 지원대상
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
※ 자녀가 영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·통지 확인서로 대체 가능

○ 지원내용

- 발달장애인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 수립
-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제공
-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
-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 등

○ 신청방법

-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-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

Q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란?

형사절차상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

○ 지원대상

- 유기등 범죄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피해자, 발달장애인 피의자·피고인

○ 지원내용

- 신고접수 : 신고 사실이 유기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
- 현장조사 및 방문 : 신고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, 유기등의 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질문
- 보호조치 :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또는 의료기관 등 안전한 곳으로 보호조치
- 형사·사법절차지원 : 수사절차 및 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 피해자 또는 피의자, 피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관련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

○ 신청방법

- (조사 시) 경찰서 등 형사사법기관, 법원 등
-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

Q 공공후견지원사업이란?

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후견서비스를 제공·정착시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및 자립생활을 지원

○ 지원대상

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사람

○ 지원내용

- 전문상담 및 후견계획 지원 : 후견관련 초기상담 및 진행과정, 후견인 활동 등의 관련 정보제공 등
- 후견심판청구지원 : 법원제출용 서류취합 및 청구서·기타서면 작성,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등
- 활동비 지원 : 공공후견인에게 1인 월 20만원, 2인 월 40만원 3인 이상 월 50만원까지 활동비 지원

○ 신청방법

-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-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

Q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이란?

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, 여가,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,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

○ 지원대상
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및 그 가족
※ 지적장애,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
※ 자녀가 영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 가능

○ 지원내용

- 힐링캠프 : 가족캠프, 인식개선캠프,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·치유 프로그램 제공
※ 강사초빙,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
- 테마여행 : 체험여행, 역사탐방,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
※ 여행지 관광중심(체험비 가능) 지원,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
- 자율여행 :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※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

○ 신청방법

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사업 수행기관

Q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이란?

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·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가족기능 향상 도모

○ 지원대상
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둔 부모 및 보호자
※ 지적장애,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,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
※ 자녀가 영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 가능

○ 지원내용

-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/집단 상담 제공
-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(월 16만원)를 12개월 동안 제공
-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한 경우, 1회(최대 12개월) 지원 연장

○ 신청방법

-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
Q 발달장애인가거점병원·행동발달증진센터란?

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로서비스 지원

○ 지원대상
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
※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
※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 중 심각한 자해나 타해로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가능

○ 지원내용

- 진료 코디네이팅 제공을 통해 원활한 의로서비스 이용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진료과목 간 협진을 통한 효율적인 의로서비스 제공
- 중증 행동문제에 대한 1:1 치료 개입
- 발달장애인 관련 가족 및 종사자 교육, 행동치료 연구

○ 신청방법

- 전국 10개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·행동발달증진센터('23.2월 기준)

서울특별시	한양대병원 02-2290-8873/9470 서울대병원 02-2072-1549
부산광역시	부산 온종합병원 051-607-0012
인천광역시	인하대병원 032-890-1051
경기도	성남시의료원 031-730-4320
강원도	강원대병원 033-243-0303 연세대원주 세브란스 기독교병원 033-742-2258
충청북도	충북대병원 043-269-7878
전라북도	전북대병원 063-259-3319
경상남도	양산부산대병원 055-360-3555

2023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
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

발달장애인 주간·방과후활동서비스

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

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(영유아기, 성인전환기)

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(성인권)

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

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?

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

○ 지원대상

-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
※ 우선적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% 이상 선정
(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합조사 결과 22점 이상인 대상자)

○ 서비스 제공시간

- 기본형(월 132시간), 확장형(월 176시간), (월~금, 9~18시)
※ 주간활동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복 이용자 중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월 22시간 차감

○ 서비스 제공 단가 기준

- 15,570원(시간당)
(1인 집중지원서비스 150%, 2인 그룹 100%, 3인 그룹 80%)

○ 제공 서비스

- 소그룹별로 주간에 지역사회 내에서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

○ 신청기간

- 연중 상시 가능

○ 신청방법

-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
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란?

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전한 돌봄을 받고, 유익한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하는 서비스

○ 지원대상

-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
※ 돌봄취약가구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부모, 한부모 및 조손가족, 맞벌이가구, 다장애가구(형제·자매) 등)의 경우 우선 선발 가능

○ 서비스 제공시간

- 월 66시간(월~토, 9~21시 중 일일 최대 9시간)

○ 서비스 제공 단가 기준

- 15,570원(시간당) (2인 그룹 100%, 3인 그룹 90%, 4인 그룹 80%)

○ 제공 서비스

- 소그룹별로 주간에 지역사회 내에서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

○ 신청기간

- 연중 상시 가능

○ 신청방법

-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
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란?

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 일시적(7일)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('23년 4월부터)

○ 지원대상

-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

○ 서비스 이용사유

- 보호자의 입원·치료, 경조사, 신체적·심리적 소진 등

○ 서비스 지원기간

- 1회 입소 시 1~7일(연 최대 30일)
※ 입소 사유에 따른 이용 기간 상이

○ 서비스 이용료

- 1일 이용료 15,000원(식비 30,000원 별도 부담)
※ 식비: 개인 부담 15,000원+국비 지원 15,000원
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 (단, 식비는 부과)

○ 지원서비스

- 일상생활, 사회참여 활동, 식사, 야간 돌봄 등 지원

○ 신청방법

- 평일 주간(9:00~18:00):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
- 평일 야간(18:00~9:00), 주말, 공휴일, 당일입소: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



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이란?

발달장애(지연)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기술 교육 및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

○ 지원대상

- 만 6세 미만의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및 보호자, 관련분야 종사자
※ 발달장애 의심 참여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, 치료센터 등의 소견서 증명

○ 지원내용

- 기본형: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특성 및 양육기술 제공
- 자율형: 지역특화 교육,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, 찾아가는 부모교육
- 자조모임형: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 직접 운영
※ 총 회기 중 상담 및 교육 관련 내용 30% 이상 진행

○ 신청방법

-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사업수행기관

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이란?

발달장애 청소년(성인전환기) 자녀의 자립역량강화 및 개인별 적합 진로 모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

○ 지원대상

- 만 12세~18세 청소년기(성인전환기)당사자, 부모 및 보호자, 관련분야 종사자

○ 지원내용

- 현장체험형: 현장 진로(직업)체험 및 기관방문
- 멘토형: 진로(직업)관련 강의, 박람회 및 페스티벌 참가
- 자조모임형: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 직접 운영
※ 총 회기 중 사회적경제(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등) 관련 교육 30% 이상 진행

○ 신청방법

-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사업수행기관

성인권 교육사업이란?

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적인 인식 및 행동에 적절한 코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

○ 지원대상
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및 그 가족 등 보호자, 발달장애인 대상 직접서비스 제공 종사자

○ 지원내용

-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성인권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 진행

성인권 관점에 대한 접근

성고충 사례에 대한 집단 및 개인상담

성인권 사례별 대응방안 교육

성인권 관련 주제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

경계존중교육, 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폭력 피·가해 예방을 위한 교육

※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 시행됩니다.

○ 신청방법

-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사업 수행기관



1 중앙센터
T. 02-3433-0743

2 서울센터
T. 02-2135-3635

5 인천센터
T. 032-715-4363

10 경기센터
T. 031-548-1393

9 세종센터
T. 044-414-9172

13 충남센터
T. 041-415-1215

7 대전센터
T. 042-719-1085

14 전북센터
T. 063-714-2610

6 광주센터
T. 062-714-3352

15 전남센터
T. 061-802-1062

18 제주센터
T. 064-803-3714

11 강원센터
T. 033-817-2357

12 충북센터
T. 043-716-2163

16 경북센터
T. 054-805-7310

4 대구센터
T. 053-719-0340

8 울산센터
T. 052-710-3154

17 경남센터
T. 055-716-2390

3 부산센터
T. 051-714-7360

홈페이지 www.broso.or.kr

상담문의

- 중앙·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